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49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1.

다.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u>기관</u> 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⑤ (생략) <u><신설></u>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기관</u> 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u>같다</u> -----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2. <u>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⑦ <u>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 ⑧ <u>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직급 등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⑨ <u>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생략)	⑩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⑪ (현행 제6항과 같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지난 2019년,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신설한 위원회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¹⁾. 심의사항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이 있음²⁾.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함)의 3분의 1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하고³⁾,

1) 붙임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참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함⁴⁾.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①심의위원회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사건에서 배제되는 “제척”, ②심의위원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해당 위원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기피”, ③심의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물러나는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⁵⁾.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중 기피 제도는 그 성질상 당사자가 심의위원의 소속·직급 등 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만 기피 신청이 가능할 것인데,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 제도의 활용이 저조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심의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위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활용이 부진했던 기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심의위원의 소속, 직급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심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피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사실상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심의위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은 교육장의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⁶⁾.

다만, 심의위원의 소속이나 직급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되는 경우, 가해학생 등이 심의위원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으므로 심의위원들이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2024.1.2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진정0261300

한편, 개정안은 추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안 제13조제6·7·9·10항).

어떠한 내용을 법률과 대통령령 중 어디에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 장치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공정한 처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은 강력하고 명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유사한 입법례로 「행정심판법」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⁷⁾하였고,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제척·기피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⁸⁾한 바 있음.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 기피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안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임.

정보 제공의 요청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

7)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⑧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2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터 적용할 것인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 개정안 본칙의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적용례를 두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⁹⁾.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직급 등 위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가해학생 측에서 심의 전 사전접촉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청탁을 하거나 위협을 가해 공정한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위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심의 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를 어려워하여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인간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좁은 지역 사회인 경우에는 사전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원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¹⁰⁾은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9)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847

적용례는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한다.

적용 대상이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특정 단계나 시점의 사람이나 사항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적용례를 두면 그 적용 대상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고, 특히 과거부터 신법 시행 당시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어느 시점이나 단계부터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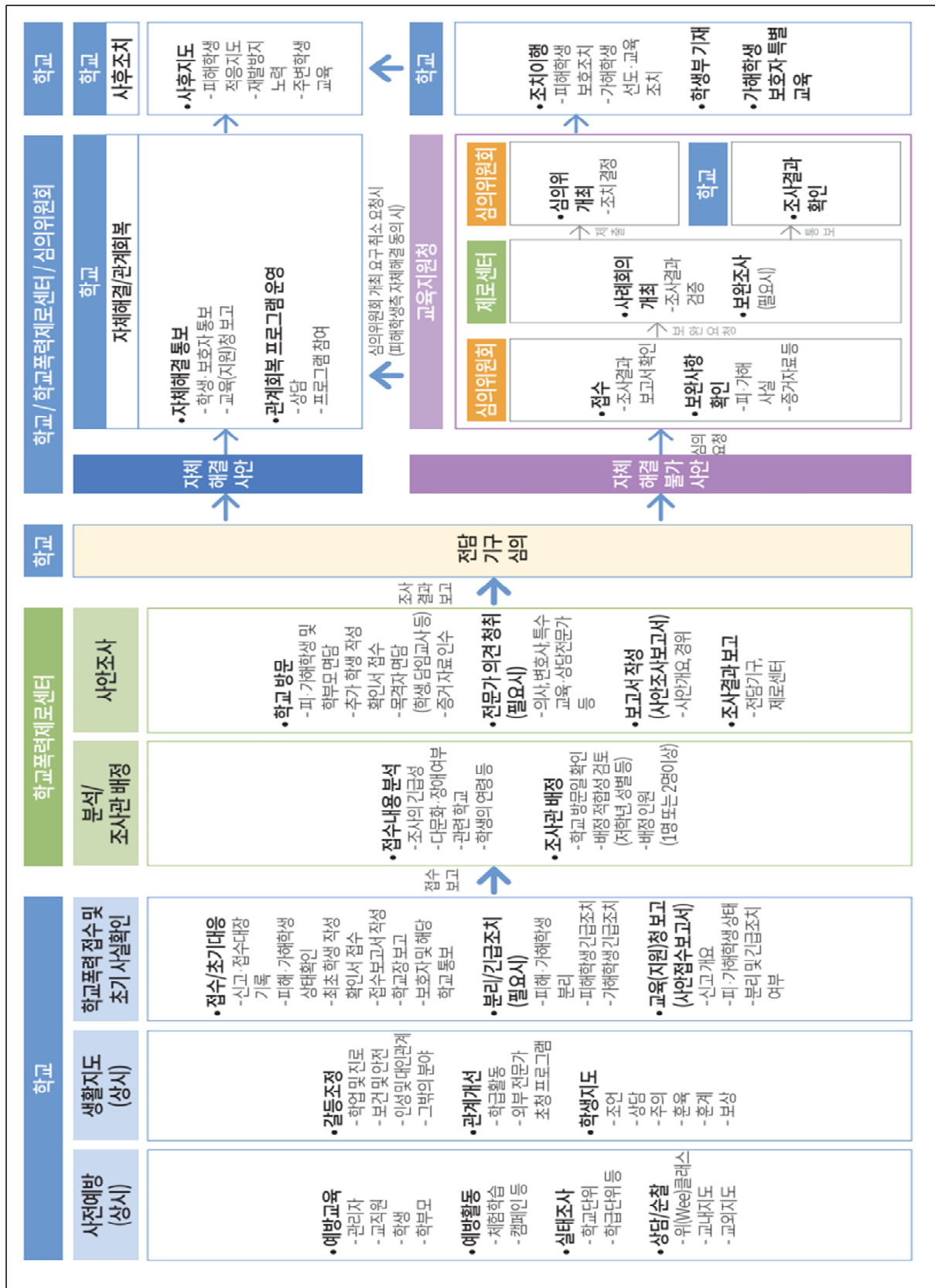
10) 서울, 세종, 제주, 광주, 부산, 강원, 전남, 경북 등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

초래할 수 있고, 기피대상이지만 오히려 기피하지 않고 사전접촉을 통해
유리한 심의·의결을 종용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부담스러워하여 위원회 구성 또한
어려워질 수 있고, 심의위원들이 개인정보 노출로 보복성 민원이나 사
생활 침해에 시달릴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자료: 교육부